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9
------	----

2018. 9. 7.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8.9.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9천여 기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서울시 최대 산

업 및 고용 중심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G밸리 기업투자펀드 111억원을 조성·운용 중(서울시 총 출자금액 5억원 중 3억원 既 출자)에 있으며,

나.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원을 추가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 G밸리 종합발전계획-G밸리 飛上프로젝트 시즌2(시장방침 '15.11.)
-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운용 계획(부시장 방침 '16.3.)

나. 출자 필요성

- 서울시 최대 IT중심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G밸리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창업→ 투자 → 성장 → 자금회수 → 재투자)
- 창업초기 중소기업 위주의 G밸리 內 기업특성장 사업규모 확대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절실
- G밸리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및 정부 요구사항 1순위는 자금 조달 문제

다. 펀드 개요

항 목	내 용
펀드명칭	G밸리-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
구성형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 용 사	(주)플래티넘기술투자(모태펀드 출자 운용사 대상 선정)
구성기간/투자기간	'16.8.4 ~ '25.8.3(9년)/'16.8.4 ~ '20.8.3(4년)
출자자 및 출자금액	총 111억원 - 서울시(5억,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 SBA(5억)/ 구로구(3억)/금천구(3억)/모태펀드(70억)/ 플래티넘 기술투자(15억)/ 산은캐피탈(10억)
투자대상	G밸리 소재 창업 중소기업(7년 이내), 벤처기업 등

라. 출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서울시가 운용 중인 G밸리 기업펀드에 투자를 약정한 금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나. G밸리 활성화와 G밸리 기업펀드의 조성 배경

-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1964년에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되었고 당시에는 구로공단으로 불리었으나, 정부가 2000년대부터 IT 첨단 산업단지로 육성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음.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면 적 : 1,925㎡ (약 58만 평) - 1단지 → 구로구 구로동, 가리봉동 - 2,3단지 → 금천구 가산동 ○ 입주기업 현황('16년 3월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체 수 : 9,832개 업체 ※ 지식산업센터 113개소 - 고용인원 : 160,151명 - 업종 : IT, SW 등 지식기반산업(53%), 전기전자(24%), 기계(6%), 섬유 의복(6%), 기타제조(9%) 	<p>서울디지털산업단지 위치도</p>
---	----------------------

- 서울시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교통, 환경, 주거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 하고 있는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G밸리 비상 프로젝트 계획’¹⁾를 수립·추진하고 있음.²⁾

1) G밸리 비상 프로젝트는 기업인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G밸리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수립되었고 현재 서울시는 산업 활성화, 녹지문화공간 확충, 보육주거기능 강화, 도로교통 개선, 제도정비 브랜딩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G밸리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2) ‘G밸리’는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의 영문 이니셜인 ‘G’에 ‘밸리’를 합성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별칭임.

- G밸리 기업 투자펀드(이하 ‘펀드’)는 창업초기인 중소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G밸리의 지역적 특성과 기업들의 요구³⁾를 고려하여 G밸리 기업들의 사업규모 확대와 내실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음.

다. G밸리 기업펀드의 운용 현황

- 서울시는 펀드 조성 규모의 확대와 펀드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모태펀드⁴⁾를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구로구·금천구와 G밸리 관련 민관기관을 펀드 출자에 참여시켰음.
- 서울시는 모태펀드와의 연계성 확보와 경기변동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1차 펀드를 우선 운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4차까지 순차적으로 펀드의 조성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임.

<G밸리 기업투자펀드 운영 계획>

항 목	내 용
펀드명칭	G밸리 기업 투자 펀드 제1호~제4호
펀드조성형태(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금조성 기간	2016년 ~ 2019년(4개년)
펀드규모	총 600억원 (펀드별 150억원)
조성금액 구성	서울시(20억원), SBA(20억원), 구로구(12억원), 금천구(12억원), (사)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 연합회(20억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20억원) + 모태펀드 + 기타투자자 등
펀드운용사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를 대상으로 선정
존속기간	8년 이상 (투자 4년)
주요 투자대상	G밸리 소재 중소·벤처기업

3) 서울시의 G밸리 입주기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조달·운영 등 자금관리 분야이고(26.2%), 가장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는 정책자금(금융) 지원(59.2%)임(2013년 5월, 사업주 표본 600명 조사)

4) 벤처투자 재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의 8개 부처가 투자재원을 공급하여 조성('05.7월 결성, '15.9월 기준 펀드규모는 2조 7,310억원)하여 단일기업이 아니라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로, 운용주체는 한국벤처투자(주)임.

- 제1차 G밸리 펀드의 운용사로 (주)플래티넘기술투자가 선정됐고, 펀드결성 총회 개최와 설립출자금 납입을 거쳐 펀드가 최종 결성 되었음(2016. 8. 4).

<제1차 G밸리 기업투자펀드 현황>

항 목	내 용
펀드명칭	G밸리-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
구성형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 용 사	(주)플래티넘기술투자(모태펀드 출자 운용사 대상 선정)
구성기간/투자기간	'16.8.4 ~ '25.8.3(9년) / '16.8.4 ~ '20.8.3(4년)
출자자 및 출자금액	총 111억원 - 서울시(5억) / SBA(5억) / 구로구(3억) / 금천구(3억) / 모태펀드(70억) / 플래티넘기술투자(15억) / 산은캐피탈(10억)
투자대상	G밸리 소재 창업 중소기업(7년 이내), 벤처기업 등

<출자규약의 주요 내용>

○ 투자대상 - 주목적 투자와 특수 목적투자는 중복가능(예 G밸리 소재 청년기업 등)

구분	투자규모	내 용
주목적 투자 (모태펀드)	약정총액의 6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3년 또는 7년 이내의 창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이면서, 대표이사 만39세이하 또는 29세이하 임직원 50% 이상
특수목적 투자 (서울시 등 4개기관)	출자금액 의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G밸리 소재 기업(본사, 지점, 공장 또는 연구소가 G밸리내에 소재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해 선정된 기업

○ 펀드운용 보수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 보수 규정 준용)

- 관리보수 : 2.5% [3년내(조합약정총액 기준) / 3년 이후(투자잔액 기준)]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 기준수익률 : 6%(모태펀드 0%)

- 현재까지 펀드 조합원들은 총 출자 약정금액 111억원 중 40%를 납입하여 44억원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고, 총 9개 기업에 29억 6천만원이 투자되었음.

- 서울시의 현재 출자액은 2억원이며, 2018년 9월 20일에 20%, 2019년에 40%를 추가 납부할 계획임.

<G밸리 기업지원펀드 출자금 납입 현황 ('18. 08. 기준)>

(단위:백만원)

조합원	약정액	약정비율	납입액	납입비율	조합원유형
플래티넘기술투자(주)	1,500	13.5%	600	40.0%	운용기관(GP)
서울특별시	500	4.5%	200	40.0%	지방자치단체
구로구	300	2.7%	120	40.0%	지방자치단체
금천구	300	2.7%	120	40.0%	지방자치단체
(재)서울산업진흥원	500	4.5%	200	40.0%	기타단체
산은캐피탈(주)	1,000	9.0%	400	40.0%	금융기관
한국모태펀드	7,000	63.1%	2,800	40.0%	한국모태펀드
합계	11,100	100.0%	4,440	40.0%	

- 한편, 펀드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조성금액(44억원) 대비 투자금액(29.6억원)의 비율이 67.2%로 부진하고, 이 중 G밸리 소재 기업(2건, 6억원)에 대한 투자 규모는 출자규약의 기준보다 저조한 측면이 있음.

- 출자규약상 출자기관의 투자규모에 비례해 희망 대상에 대한 투자가 결정되므로, 서울시, 구로구·금천구, 서울산업진흥원의 투자액이 소규모(총 16억, 전체 14.4%)라는 점에서 정책적 투자 목적 달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G밸리 펀드 투자실적>('18. 08. 기준)

(단위 : 원)

투자일	투자기업명	소재지	투자금액	업종	비고
'16.12.22	(주)레티널[1]	성동구 사근동	100,000,000	LetinAR렌즈 제조 (증강현실 활용을 위한 렌즈)	청년기업
'16.12.29	(주)큐티젠 래버러토리스	금천구 가산동	100,000,000	출기세포 활용 화장품 제조	G밸리 소재 청년기업
'17. 4.25	(주)맥스플로러	경기도 안산시	352,750,000	화학소재 “그래핀” 개발	청년기업
'17. 6.22	(주)레티널[2]	성동구 사근동	199,950,969	LetinAR렌즈 제조 (증강현실 활용을 위한 렌즈)	청년기업
'17. 6.30	(주)볼트크리에이션	성북구 삼선동	500,308,30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청년기업
'17. 9.18.	큐디브릭(주)[1]	서초구 양재동	100,020,000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청년기업
'17. 11.14.	에코디엠랩(주)	청주시 흥덕구	116,144,000	의료기기용 세라믹 초음파센서 제조	청년기업
'18. 3. 21.	와이엠피(주)	경기도 안성시	500,000,00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청년기업
'18. 5.15.	큐디브릭(주)[2]	서울시 서초구	100,020,000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청년기업
'18. 7.13.	(주)엑소코바이오	금천구 가산동	500,000,000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G밸리 소재 청년기업
'18. 7.20.	(주)피알지에스앤틱	부산시 금정구	100,000,000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	청년기업
'18. 8.24.	(주)레티널[3]	서울시 서초구	300,000,000	LetinAR렌즈 제조 (증강현실 활용을 위한 렌즈)	청년기업

- 특히, 현재까지 투자한 대상기업이 모두 청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G밸리 소재의 일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정책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라. 종합의견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8조).
- 이번 출자 동의안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⁵⁾를 출자의 근거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오히려,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⁶⁾가 타당함.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또한, 동의안에는 현재까지 서울시가 출자한 출자금액을 3억원(실제 2억원)으로 오기하는 등 부정확한 내용으로 시의회의 안건 심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아울러, G밸리 활성화라는 서울시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펀드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 출자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 지분양도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G밸리 기업펀드 운용을 위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49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9천 여 기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서울시 최대 산업 및 고용 중심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G밸리 기업투자펀드 111억원을 조성·운용 중(서울시 총 출자금액 5억원 중 3억원 既 출자)에 있으며,
- 나.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원을 추가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 G밸리 종합발전계획-G밸리 飛上프로젝트 시즌2(시장방침 '15.11.)
-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운용 계획(부시장 방침 '16.3.)

나. 출자 필요성

- 서울시 최대 IT중심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G밸리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창업→ 투자 → 성장 → 자금회수 → 재투자)

- 창업초기 중소기업 위주의 G밸리 內 기업특성장 사업규모 확대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절실
- G밸리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및 정부 요구사항 1순위는 자금 조달 문제

다. 펀드 개요

항 목	내 용
펀드명칭	G밸리-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
조성형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 용 사	(주)플래티넘기술투자(모태펀드 출자 운용사 대상 선정)
조성기간/투자기간	'16.8.4 ~ '25.8.3(9년)/'16.8.4 ~ '20.8.3(4년)
출자자 및 출자금액	총 111억원 - 서울시(5억,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 SBA(5억)/ 구로구(3억)/금천구(3억)/모태펀드(70억)/ 플래티넘 기술투자(15억)/ 산은캐피탈(10억)
투자대상	G밸리 소재 창업 중소기업(7년 이내), 벤처기업 등

라. 출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어야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지원시설"이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신제품·기술·연구개발,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제14조(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① 시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투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 기금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정책팀 이성태 (☎2133 - 4823)